



가 정 통 신 문



http://www.gaon21.ms.kr/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안내

교훈 : 성실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 (학생인권부) 031-365-8266, ☎ (행정실) 031-365-8207

담당 : 학생인권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 가족 모두 건강하십니까?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사, 학생 모두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용

자율
공감
미래

“선생님이 보호받는 교실, 우리 아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으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보호

학생 지도·교육은 교원의 권한이자 법적 책무이며,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되는 의무가 있으며, 학부모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권 보호 5법이란?

교권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령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을 말함

교권 보호 5법으로 교육활동을 보호가 강화됩니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착위해제 처분 금지

*정당한 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설서 등에 따른 생활지도

✓ 보호자의 권리-책임 간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 존중 의무 부여

✓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격상



유치원 원장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 학생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학부모의 악성민원 유형 신설



선생님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

Ⓞ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신청)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신청) (미이행시 최대 30일간 교육부 부과)

✓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즉시 분리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운영



교원자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시 징계 조치)



특별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출석정지 조치 이상으로 확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2023.9.27. 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상대, 폭행



협박, 손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 성적인 언동



불법정보유통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배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의도적 수업 방해(신설)



악성 민원 제기(신설)



교원의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는 행위(신설)



무고(신설)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준중해 주세요!

- ① 문의는 근무 시간 내에
- ② 상담은 약속 시간을 정해서
- ③ 교육활동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맡겨주세요.



민원 제기 전에!

- ① 감정을 가라앉혀요.
- ② 전화나 서면으로 먼저 상담해요.
- ③ 사실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요.



2024. 3. 25.

시흥가온중학교장[직인생략]